

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안사유

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운영시설 정의(안 제3조)

- 체육시설 : 수영장, 헬스장, 에어로빅장, 다목적체육관
- 부대시설 : 사무실, 다목적회의실, 휴게실, 텔의실, 샤워장, 화장실, 기계실 등

나. 시설 사용료의 징수(안 제6조)

-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구청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다.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(안 제8조)

- 체육센터를 효과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라. 회계관리 등(안 제12조)

- 수탁관리자가 하는 국민체육센터의 회계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한다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5조제2항
- 나. 입법예고 : 2006. 1. 10 ~ 1. 31(20일간)

4. 검토의견

- 1,109평 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사하구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, 헬스장, 에어로빅장, 다목적체육관으로 구성되어 있고,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경험이 있는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이나 체육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므로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수납하여 센터를 운영하는 독립채산제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
- 수영장, 헬스장, 에어로빅장의 사용료는 공공성과 경제성이 조화로워야 하므로 사용료의 책정은 적정가격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됨